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639호

「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」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23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」 전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부속서 7(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) 일부 누락사항을 반영하고, 고시 명칭에 부합하게 제명 변경 및 부속서 7 체계로 조문 배치 등 국제 표준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「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」을 고시 명칭에 부합하게 「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」으로 제명을 변경

- 나. 국제기준 관리 및 가독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부령 및 타 행정규칙에 산재된 등록 관련 기준을 동 고시로 옮기고 부속서 7 체계와 동일하게 재편(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)
- 다. 동 고시의 별표 2·3에서 규정한 경량항공기 등록부호의 표시장소 및 크기를 본문의 항공기 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및 높이 편으로 병합(안 제4조 및 제5조)
- 라. ICAO 부속서 7 제2.1조의 항공기 구분표(Table 1)를 신설(안 제2조, 별표 1)
- 마. 재검토기한 연장(안 제12조)

3. 의견제출

이 「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」의 전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항공기술과)로 2023년 6월 12일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- 라. 보내실 곳 : (339-01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
(☎ 044-201-4785, 팩스 044-201-5630)

※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법령정보(입법예고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